

춘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36203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36203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538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정현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온

담당변호사 한상연

변론종결 2024. 9. 12.

판결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538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피고에게”를 “G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항의 [인정 근거](3면 13, 14행 부분) 중 “을 제1 내지 3, 5호증”을 “을 제1 내지 3, 5, 17호증”으로,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2행, 6면 13, 19, 20행, 7면 1행의 각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4, 15행의 “C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2019. 11. 8.)하기도 전인 2019. 8. 20.에 체결된 점”을 “위 임대차계약은 H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9. 11. 8.보다 앞선 2019. 8. 20.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배성준, 판사 허경은

별지